

시론



김 성 천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학)
-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 좌파 법적대적 속성의 비극

집안에 현금 3억여 원을 숨겨 뒀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체포동의안들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가결되었던 점과 크게 대비된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 구속 상황이 다가옴에 따라 미리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행연습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범죄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단 혐의를 부인하여 없던 일로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방어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해에 가까운 행동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법원은 형량을 높일 수밖에 없다.

‘無錢有罪 有錢無罪’가 실제로 나타나는 원인 가운데 일부가 바로 이러한 피의자(피고인)의 태도에 연유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혐의부인이 가능한가를 먼저 짚어보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이끌게 마련이다.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는 충격에 휩싸여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 시키는 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 같은 일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세련된 모습을 위해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유전무죄 현상은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

그런데 유독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은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제시돼도 끝까지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우기는 태도를 보인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된 이 흐름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좌파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이런 좌파적 시각은 조국사태와 함께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유방식이 조국사태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 경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명숙 前 총리가 사실은 결백하였다고 우긴 일도 있으니 좌파의 사법제도 무시현상은 뿌리가 깊어 보인다.

이러한 이해가 맞는다고 하려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정당이어야 한다. 현재의 제1야당은 해방 이후에 친일 지주세력과 민족주의 우파세력이 규합하여 만들어진 한민당을 뿌리로 한다. 창당 후 한민당은 민주당, 신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

생만 보면 좌파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원래 우파정당이었던더라도 특별한 계기 때문에 당의 속성 자체가 좌파로 거듭날 수도 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90년에 있었던 3당 합당과 그 이후의 상황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그 당시에 합당을 거부하고 잔류한 평화민주당이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집권과정에서 좌파성향의 운동권세력을 대거 흡수하였다. 이를 통해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좌파적 성향이 상당히 강해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모여 있는 인사들의 이념적 색채가 너무 다양하기에 ‘좌파’ 정당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보다는 ‘좌파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검찰이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달리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선출된 정치엘리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대의민주제 옹호론으로서 본래 우파적 태도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법치주의의 근본 중 하나라고 볼 때 검찰을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려는 태도는 법적대적 성향으로서 좌파적 태도이다. 우파적 태도를 취하면서 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으니 진정한 좌파정당은 아니지만 좌파적 성향을 가진 정당은 맞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법질서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좌파적이다. 극단적 좌파

는 법을 자본가집단의 계급 지배도구로 본다. 그래서 좌파는 법체계에 대해 적대적이다. 법체계라는 것이 본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므로 좌파는 자본주의 법질서의 붕괴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권력을 독점하면서 억압체제로 변모한다. 북한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체제유지를 위해서 법을 도구로 사용한다. 법은 좌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유용한 도구이지만 결코 그 선을 넘어서 법치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법이 어찌 감히 정치를 넘어서려고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질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초반에는 검찰을 활용해서 적폐청산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그러다가 검찰이 정권실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하자 이번에는 검찰을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결국,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입법적 시도까지 했다. 자신들의 敵을 제거할 때는 활용할 가치가 있지만, 이를 넘어 법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면서 독자적인 정당성과 존재이유를 확보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는 문제 따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들은 법치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유신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2·12 군

사반란과 5·18 내란사건에 대한 기소촉구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혹시 좌파가 아니었나 하는 점이다.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을 때 강력한 비난을 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과 정부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법 앞의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도 좌파 진영에 속한다. 이 때문에 좌파가 법치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오해가 생겼다. 하지만 좌파는 법과 질서에 대하여 적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

1970년에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이래 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좌파라고 인식하는 오류에 빠져왔다. 당시에 반공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게 된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민주투사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니 법학은 매우 보수적인 학문영역이다.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좌파가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좌파를 열렬하게 지지한 이유는 그들이 개발독재의 모순과 권력형 비리 등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들 비판활동의 주요논리는 사실 법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는 좌파가 법치주의를 중요한 가

치로 채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법치주의자들이 좌파진영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파의 법적대적인 속성은 이를 통해서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황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는 법률전문가 출신들조차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을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독재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쥐어 주었으며, 관내 기업체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 씩의 뇌물이 공여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좌파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호사 출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중범죄자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피의자라는 이유로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법률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법적대적 성향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면 법과 등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 자신이 변호사이었던 문재인 前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탈북어민 강제복송사건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좌파정권의 잔인함으로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을 탈출했던 두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對태러 특수부대 요원들이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하여 군사분계선까지 압송해서 북한군에게 인계했다. 탈북어민을

강제로 복송하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처형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다. 강제로 송환된 두 북한주민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국적법이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다. 더구나 그 두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들의 기본권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은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우기기까지 하였다.

조국에서부터 이 대표까지 좌파법률가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법체계가 좌파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에만 머무르게 하려 한다는 점이다. 형사법의 기능을 '반혁명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 적발하여 철저히 진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태도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히 좌파적 시각에서 법질서를 유린하려 하니 법질서가 스스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땅에 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란다.